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탁관리 협약서

김해시(지방자치단체장)는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장(수행기관장)에게 『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(사회서비스형·취업알선형)』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제1조(위탁의 내용) 본 협약상 『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(사회서비스형·취업알선형)』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활동사업의 연간 계획수립
- ② 공익활동사업과 관련 예산집행(활동비, 부대경비)
- ③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및 교육 활동
- ④ 기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

제2조(위탁기간)“지방자치단체장”와“수행기관장”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24. 1. 1. 부터 2024. 12. 31. 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전에는“지방자치단체장”의 운영평가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, 변경 및 축소할 수 있다.

제3조(사업)“수행기관장”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① 위탁사업은 사회서비스형 및 취업알선형 8개사업, 914명으로 아래와 같다.
 - 사회서비스형(7개사업, 340명) : 우체국공공행정지원사업, 복지관공공행정지원사업, 공공행정지원사업, 시니어소방안전지킴이, 시니어플러스지원사업, 돌봄시설지원(꿈나래방), 온누리지원사업
 - 취업알선형(1개사업, 574명) : 한울인력뱅크
- ② 대상 사업지역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의 시책변경이나 필요시 재조정 할 수 있으며, “수행기관장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참여대상은 사업유형별 김해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여야 한다.
- ④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월 60시간 활동, 취업알선형의 경우 채용기관 및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시간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하다.
- ⑤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사업을 책임지고,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비용) 『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(사회서비스형, 취업알선형)』 비용 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김해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14조 및 15조」에 의거, 사업 참여 노인들의 사업비를 각 단위사업 운영비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비용은 단위사업 참여 노인의 활동비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다.
- ③ 사회서비스형은 최소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으로 월 최대761,040원(주휴수당포함),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 하여야 한다. 취업알선형의 경우 취업기관별 운영을 달리한다.
- ④ 비용의 지급 시기는 ‘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’ 활동 내용 지급 기준에 의하여 “수행기관장”이 청구하며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분기별 지급한다.

제5조(장부 등의 비치) “수행기관장”은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.

(사회서비스형) 사업신청 제반 서류,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(참여자용) 상담의견서, 참여자 명부 및 인건비 입금 계좌내역, 인건비 대장명부, 사업현황 보고, 출석부, 금전 출납부, 지출 증빙서류 등
(취업알선형) 사업신청 제반서류, 구직 신청서, 구인 신청서, 취업확인서, 금전 출납부, 지출 증빙서류 등

제6조(사고책임) 상해 등 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 하고, 근무시간 내 재해 및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획수립, 교육실시 등 자체 방안을 수립하며 사고발생에 대하여는 “수행기관장”이 책임을 진다.

제7조(중대재해 예방)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, 종사자의 안전·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② “수행기관장”은 위탁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, 이를 즉시 ‘관리청’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도·감독·조치) ① 『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』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“수행기관장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수시 『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』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.

③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, 당해 연도 협약체결 해지, 익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9조(교육) “수행기관장”은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각종 교육 등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사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 참여 및 이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해약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“수행기관장”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.

② “수행기관장”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,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2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.

제13조(협약서의 작성)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,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2월 22일

“지방자치단체장” 김해시장 (인)

“수행기관장”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장 (인)

